



질병관리청

질병관리청



질병관리청 콜센터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」,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
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

1. 관련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17호, 제3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
2.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「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」,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 하오니 예방접종 업무를 하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내용

- 「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」
 - 제1조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
 - [별표]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
-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
 - 제2조제2호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
 - [별표 1]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에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설

나. 발령 및 시행일: 2023년 3월 6일

- 붙임 1. 제2023-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.
2. 제2023-4호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전문.
3. 제2023-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.
4. 제2023-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전문. 끝.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대한중소병원협회장, 대한아동병원협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,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, 대한가정의학과과의사회장, 대한내과의사회장,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,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,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

보건연구사 **황윤미** 보건연구관 **이혜림** 예방접종관리 전결 2023. 3. 6.
과장 **권근용**

협조자

시행 예방접종관리과-902 (2023. 3. 6.) 접수

우 2816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, 예방접종관 / http://kdca.go.kr
리과

전화번호 043-719-8376 팩스번호 043-719-8379 / teayunmi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